

제2772호  
2020. 9. 28.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보 전 산 과 장 김 건 태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0-704호 :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제2020-705호 :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
제2020-706호 :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8
제2020-709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입법예고 .....	11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704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 조례내용을 정비하여 청소행정 다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생활폐기물용 및 사업장폐기물용 종량제봉투 100리터 삭제(안 별표 3)
- 나.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미수정 사례 정비
  - 청소행정평가위원회 위원 : 복지환경국장 → 시민친화국장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청소행정과, 전화 : 02-3396-5486, 팩스 : 02-3396-8754, email : myjworld@junggu.seoul.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3항 제2호 “복지환경국장”을 “시민친화국장”으로 한다.

별표 3(종량제봉투 가격)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 당시 공급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사용할 수 있다.

별표3

### 총량제봉투 가격(제20조 제2항 관련)

#### 1. 일반총량제 봉투

##### ○ 생활폐기물용

용 량	판 매 가 격 ( 원 )	
	2015.10. 1. ~ 2016.12.31.	2017. 1. 1. ~
3L	80	90
5L	120	130
10L	220	250
20L	440	490
30L	660	740
50L	1,100	1,250
75L	1,650	1,880

##### ○ 사업장폐기물용

용 량	판 매 가 격 ( 원 )	
	2015.10. 1. ~ 2016.12.31.	2017. 1. 1. ~
50L	1,800	2,000
75L	2,700	3,000

#### 2. 특수총량제 봉투

용 량	판 매 가 격 ( 원 )	
	2015.10. 1. ~ 2016.12.31.	2017. 1. 1. ~
20L	1,840	2,040
50L	4,590	5,100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705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환경부) 및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현실화 필요에 따라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를 인상하고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 100리터 규정을 삭제하고, 수요가 많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10리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 규칙 내용을 정비하여 청소행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생활폐기물용, 사업장폐기물용, 재사용, 특수종량제용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판매수수료 인상 6% → 9%(안 10조, 별표 2)
- 나. 생활폐기물용 및 사업장폐기물용 종량제봉투 100리터 삭제(안 별표 2)
- 다. 재사용봉투 10리터 신설(안 별표 2)

###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청소행정과, 전화 : 02-3396-5486, 팩스 : 02-3396-8754, email : myjworld@junggu.seoul.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판매이윤은 봉투가격의 6%로 한다.”를 “판매이윤은 종량제 봉투 판매가의 9%로 한다.”로 한다.

별표 2(규격봉투가격의 구성내역)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2]

## 규격봉투가격의 구성내역(제5조 관련)

## 1. 일반종량제 봉투

## ○ 생활폐기물용 봉투

(단위: 원)

구 분	2017. 1. 1. ~ 2020.12.31.		2021. 1. 1. ~	
	판매가	판매이윤	판매가	판매이윤
3 ℓ	90	5	90	8
3 ℓ (재)	90	5	90	8
5 ℓ	130	8	130	12
10 ℓ (재)	250	15	250	23
20 ℓ	490	29	490	44
20 ℓ (재)	490	29	490	44
30 ℓ	740	44	740	67
50 ℓ	1,250	75	1,250	113
75 ℓ	1,880	113	1,880	169

## ○ 사업장폐기물용 봉투

(단위: 원)

구 분	2017. 1. 1. ~ 2020.12.31.		2021. 1. 1. ~	
	판매가	판매이윤	판매가	판매이윤
50 ℓ	2,000	120	2,000	180
75 ℓ	3,000	180	3,000	270

## 2. 특수종량제봉투

(단위: 원)

구 분	2017. 1. 1. ~ 2020.12.31.		2021. 1. 1. ~	
	판매가	판매이윤	판매가	판매이윤
20 ℓ	2,040	122	2,040	184
50 ℓ	5,100	306	5,100	459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706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환경부, 2019.4.8.) 및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현실화 필요에 따라 우리 구 규칙 내용을 정비하여 청소행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판매이윤 인상 8% → 9% (안 별표 3)

###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청소행정과, 전화 : 02-3396-5486, 팩스 : 02-3396-8754, email : myjworld@junggu.seoul.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구성내역)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구성내역 (제5조 관련)

1. 일반가정(단독주택)

1. (단위 : 원)

구 분	2017. 1. 1. ~ 2020.12.31.			2021. 1. 1. ~		
	판매가 (100%)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sup>1)</sup> (92%)	판매수수료 <sup>2)</sup> (8%)	판매가 (100%)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sup>1)</sup> (91%)	판매수수료 (9%)
1ℓ	100	92	8	100	91	9
2ℓ	200	184	16	200	182	18
3ℓ	300	276	24	300	273	27
5ℓ	500	460	40	500	455	45

2. 일반가정(공동주택)

2. (단위 : 원)

구 분	2016년			2017. 1. 1. ~		
	판매가 (100%)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100%)	판매수수료 (0%)	판매가 (100%)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100%)	판매수수료 (0%)
120ℓ	8,400	8,400	0	12,000	12,000	0
200ℓ	14,000	14,000	0	20,000	20,000	0

3. 소형음식점(사업장)

3. (단위 : 원)

구 분	2016년			2017. 1. 1. ~		
	판매가 (100%)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94%)	판매수수료 (6%)	판매가 (100%)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94%)	판매수수료 (6%)
5 ℓ	500	470	30	700	658	42
10 ℓ	1,000	940	60	1,400	1,316	84
20 ℓ	2,000	1,880	120	2,800	2,632	168
25 ℓ	2,500	2,350	150	3,500	3,290	210
40 ℓ	4,000	3,760	240	5,600	5,264	336
60 ℓ	6,000	5,640	360	8,400	7,896	504
120 ℓ	12,000	11,280	720	16,800	15,792	1,008

※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판매수수료는 판매가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1)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 (조례 제9조의1)
- 2) 판매수수료 : 종량제봉투 또는 납부필증 판매자 수입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709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지난 2020.8.21.부터 입법예고(공고번호 제2020-627호) 하였으나, 조례안의 조문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골목형상점가 기준(안 제1조~제2조)
- 골목형상점가의 신청(안 제3조)
-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안 제4조)
- 골목형상점가의 취소(안 제6조)
-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안 제8조~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가. (우 편)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5층 전통시장과 전통시장2팀 (여관동)

나. (이메일) hrkim80@junggu.seoul.kr

다. (팩 스) 3396-8679

※ 문 의 처 : 중구 전통시장과 김혜란 ☎02-3396-5066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일정 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지원되는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상점가는 이 조례의 제2조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상인의 책무)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12조에 따른 중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중구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면적 2천제곱미터당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해당구역 안의 전체 점포수의 5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상인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해당구역을 표시한 구역도(도면)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3분의 1이상의 점포가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 사업
- 2.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 사업
-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사업비 지원) 제10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야하며,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1.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 2. 소상공인 관련 단체 임원
- 3.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屬) 할 수 있다.

-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직책을 상실한 경우
-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 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